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8. 11 선고 2019가단7633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원고 승계참가인 C 유한회사

피 고 D

소송대리인 E

피고보조참가인 E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15. 3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3. 26. 접수 제12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

피고가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

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주식회사 F은 1997. 6. 25.경 피고 보조참가인(이하 ‘보조참가인’이라 한다)에게 70,000,000원을 대출하였고 주식회사 F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

나.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청구한 양수금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05. 12. 27.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0,344,855원 및 그중 10,862,0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. 1. 13. 확정되었다.

다.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. 8. 28.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청구한 양수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. 7. 1.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0,344,855원 및 그중 10,862,0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. 8. 2. 확정되었다.

라. 보조참가인의 부친 G이 2014. 9. 4. 사망한 이후 보조참가인은 2015. 3. 24.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보조참가인의 법정상속분인 2/15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당시 보조참가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마.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3. 26. 접수 제127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바. 원고는 2019. 8. 8. 원고 승계참가인(이하 ‘승계참가인’이라 한다)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

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2019. 9. 25. 보조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6호증,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3.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인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15. 3. 24.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. 3. 26. 접수 제12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정엽

목 록

1. 순천시 H 대 479㎡

2. 순천시 H I호

[도로명주소] 순천시 J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 및 2층 점포

1층 83.1㎡, 2층 80.9㎡, 지하실 55.18㎡

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0.49㎡

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창고 46.2㎡

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21㎡

3. 순천시 K 전 168㎡, 끝.

